

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장 전자의무화 안내

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.

귀 사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‘20. 5.27(水)부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는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
이에 대장관리(종이→전자)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작성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, 대장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 아 래 --

- 관련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6조제3항(’20. 5.27.시행)
- 적용대상 : 폐기물 처분업, 재활용업 전체 및 처리신고자 중 일부

구 분	적용대상	작성대상
폐기물처분업*	폐기물 중간처분업자	폐기물 중간처분대장(폐기물처리대장)
	폐기물 최종처분업자	폐기물 최종처분대장(폐기물처리대장)
	폐기물 종합처분업자	폐기물 종합처분대장(폐기물처리대장)
폐기물재활용업	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	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
	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	
	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	
폐기물처리 신고자*	폐기물처리 신고자	

- ※ 폐기물처분업자의 작성대상은 업별로 다르나 ‘폐기물처리대장’ 메뉴로 입력대상 통합
- ※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한함

- 적용내용 : 폐기물의 발생·배출·처리상황* 등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

* 전자인계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기준 반입·반출 내역 모두 포함

- 작성기한 : 장부기록사항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력

- 조치 및 협조사항 (덧붙임1 참조)

- 전자대장 관리 이전 대장 종류에 따른 **현재보관량 보정**

- ① (처 분) 수기(종이)대장의 최종보관량을 전자대장에 입력하여 보정
- ② (재활용) 기존대장의 최종보관량을 신규*대장에 입력하여 보정

* 재활용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서식 변경에 따라 신규대장 오픈(’20. 5.27)

✓ 전자정부 입력전 사업장 보관수량에 대한 보정조치 필요 (덧붙임1 참조)

[덧붙임1] 대장종류에 따른 최초보관량 보정방법

○ 폐기물 처분대장(중간·최종·종합) 보정방법

①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- 업무시작 - 대장관리 - 폐기물처리대장 접속



그림 1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대장 접속경로

② 처리내역 또는 잔재폐기물처리내역 탭 클릭 후 신규작성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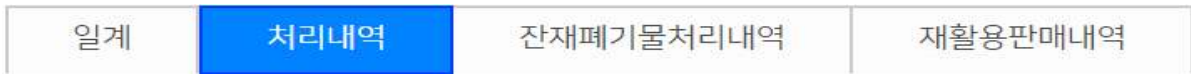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처리내역 또는 잔재폐기물처리내역 선택



그림 3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대장 내 신규작성 위치

③ 수기 - 전자대장 보정내용(수기대장과 전자대장 상 최종보관량 차이) 입력

④ 폐기물 종류, 처리방법 등 정보 입력

※ 일자: 5.26(화) 선택 / 위탁자, 운반자: '전자대장보정' 검색 후 선택 필수

상태	삭제	*일자	*폐기물종류	*성상	*위탁자	위탁자주소	*위탁량	*운반자	*처리대장구분	*처리방법
입력		2020/05/26		고상	전자대장보정	22689 인천광역시	0.000 Ton	전자대장보정	중간	

그림 4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대장 작성예시

⑤ 저장 후 <대장생성>버튼으로 5.26(화)까지 대장생성

○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(중간·최종·종합) 보정방법

①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- 업무시작 - 대장관리 -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접속

② 폐기물재활용내용 or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or 재활용제품 공급 및 보관내용 클릭 후 신규작성 클릭

③ 기존 전자대장 또는 수기대장에서 전자대장으로 보관량 보정내용 입력

④ 폐기물 종류, 재활용 제품 등 정보 입력

※ 일자: 5.26(화) 선택 / 위탁자, 운반자: '전자대장보정' 검색 후 선택 필수

⑤ 저장 후 <대장생성>버튼으로 5.26(화)까지 대장생성